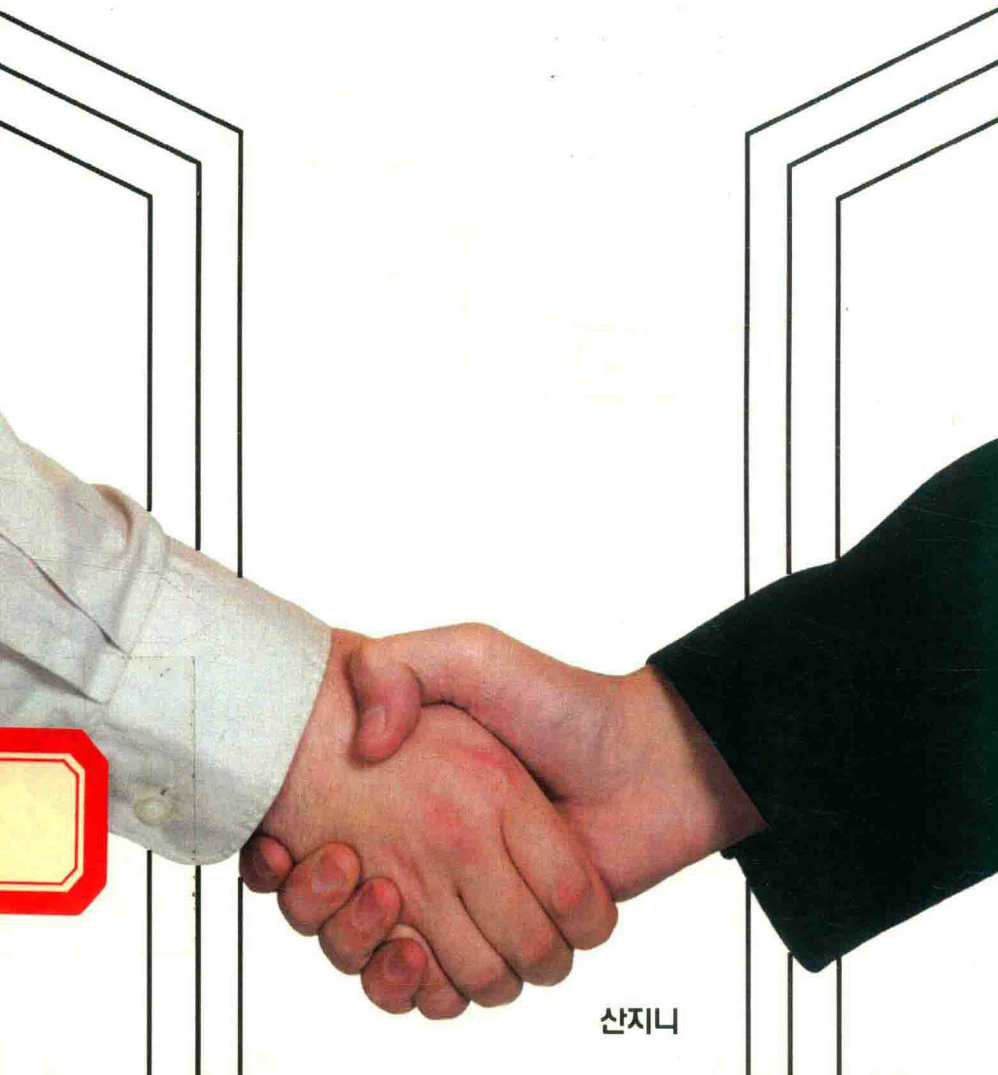


调解制度比较研究 조정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전의평
田毅平 著



산지니

조정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전의평(田毅平) 지음

산지니

조정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초판 1쇄 펴낸날 2012년 8월 20일

지은이 전의평

펴낸이 강수길

펴낸곳 산지니

등록 2005년 2월 7일 제14-49호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98-2 위너스빌딩 203

전화 051-504-7070 | 팩스 051-507-7543

sanzini@sanzinibook.com

www.sanzinibook.com

ISBN 978-89-6545-190-7 93360

값 20,000원

서 언

중국의 조정 제도는 특유하고 오래된 분쟁 해결 제도로써 중국의 전통 법률 문화에 뿌리를 내린 “결작”이고 중국 특색을 구비한 하나의 제도인 동시에 “동방 경험”이라 불리우며 각 국이 선택하는 각종 조정 제도의 발원지이고 제도문화의 요람이다. 조정 제도는 중국 법률 질서의 구성과 분쟁의 발생에 대해 다른 분쟁 해결 방식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진 제도로 선호되어 왔다. 최근 중국의 사회적 구조 조정의 의해 이익 구조가 크게 변화되었고, 사상 관념 또한 급속하게 변화되면서 사회적 모순이 발현되고 있으나 전통적인 사법 해결인 소송으로는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에 적절하지 못했다.

법률 관리와 사회 관리 경험에 대한 반성을 통해 중국은 부득이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다원화된 분쟁 해결 메카니즘을 구축하고 특히 비소송 분쟁 해결 메카니즘으로 모순을 해결하여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고 상호간의 화목을 실현할 수밖에 없었다. 조정 제도는 화목한 사회를 구축하는 시대적 요구에 따른 것으로 다원화된 분쟁 해결 메카니즘의 중요 구성 부분이 되었고 현대 사회의 극히 중요한 분쟁 해결 방식으로써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조정제도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2011년 5월, 중국중앙사회치안 종합관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국무원 법제사무실, 공안부 등 16개 중앙 부처가 연합하여 <모순분쟁 대조정 업무의 추진에 대한 지도 의견>(關於深入推進矛盾糾紛大調解工作的指導意見)을 발표하였으며 “조정” 우선을 견지하고 법에 따라 조정하며 인민 조정, 행정 조정, 사법 조정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도록 하였다. 인민 조정업무는 행정 조정, 사법 조정, 중재, 소송 전에 미리 소통하도록 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분쟁

처리 방식에서 조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조정 제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조정은 역시 극복하기 어려운 한계 또한 갖고 있다. 더욱이 전통적인 조정 제도와 현대적 조정 제도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인식하지 못한 관계로 오늘날 조정 제도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법 제도의 발전과 실행의 수요에 적용되지 못하였다. 또한 중국 조정 제도는 일종의 분쟁 해결 방식으로 그 발전이 비교적 지체되어 왔고, 개선 또한 시대적 요구를 따라가지 못했다. 특히 중국 사회 경제 등 각종 산업의 신속한 발전, 조정 기술, 조정 절차와 효력 등 구체적인 제도화 조치의 지연 등으로 분쟁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으며 날로 급증하는 다양화, 복잡화, 확대화, 치열화 되고 있는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중국의 현대 조정 제도에 드러난 일련의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이론 탐구와 실증 분석을 통해 조정제도의 혁신이 필요하다. 이는 화해적 성격의 정이 효과적인 분쟁해결제도로서 거듭날 것을 의미한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중국에서 열띤 논쟁을 일으킨 민사소송법의 전면적인 수정은 조정 제도의 심도 있는 변혁에 중요한 계기를 가져왔고 또한 중국의 조정 제도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도록 요구했다.

따라서 각 국 조정 제도와 비교분석을 통하여 중국의 조정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다. 소송이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계 각 국은 대부분 조정 제도를 발전, 강화시켜왔다. 한국, 일본과 미국의 조정 제도는 상대적으로 비교적 완벽하고 일정한 대표성을 갖고 있으며 중국에서 한창 실행되는 조정 제도 개혁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하지만 각 국 (혹은 각 지역) 사회제도, 민족역사, 문화배경, 경제조건, 생태환경, 생활습성이 각기 다르므로 민사 분쟁 해결 방식과 실행 상의 각종 차이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중국의 사회적 환경에 성공적인 적용을 위하여 선진국가의 조정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 분쟁 해결제도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려면 반드시 그에 적합한 사회적 조건에 맞추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조건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이 제도는 점차적으로 유명무실하게 되거나 사회적 현상에 적합한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조정의 기본 원리를 명확하게 밝히고 선진 국가들의 경험을 분석하여 정의, 절차 측면에서 조정을 사회관리 메커니즘의 일환으로 받아들일 것을 주장한다. 특히 중국의 사회적 구조를 배경으로 조정제도의 효율적 실행을 위해 이념적 입장과, 구체적인 제도배치 및 집행보장 등 여러 측면에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중국의 조정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찾고자 하였다.

목 차

I. 서 론	1
1. 문제 제기	1
2. 연구 목적	3
3. 연구 방법	4
II. 조정 제도의 기본 이론	6
1. 조정의 개념	6
2. 조정의 유형	12
3. 중국조정 부흥원인	25
III. 조정제도의 입법 현황	37
1. 조정제도의 운영현황	37
2. 조정제도의 입법체계	50
3. 조정의 법적 효력	80
IV. 중국 조정 제도의 문제점	87
1. 관념과 인식상의 차이점	87
2. 구체적인 제도의 불완전성	90

3. 제도 집행에 대한 보장의 결핍	101
4. 법치 수립에 대한 부정적 영향	106
 V. 중국 조정 제도의 발전방안	111
1. 조정 제도 설정이념의 재구축	111
2. 조정 제도 배치에 대한 재조정	125
 VI. 결론	154
참고문헌	159
부록	171

I. 서론

1. 문제의 제기

최근 중국에서 적극적으로 “화해사회(和諧社會)”를 구축하고 “화해사법(和諧司法)”를 도입하는 배경하에서 조정제도는 재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명확하게 “조정 우선”을 민사 재판의 기본 원칙으로 삼았으며, 각 급 법원에 엄격히 관철하고 집행하도록 요구하였다. 전국 각 급 법원도 “조정비율(調解率)”, “소송취소비율(撤訴率)”, “화해비율(和解率)”을 법관 업무 능력의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간주함으로써 조정안건 비율이 크게 제고되었다. 심지어 “문제해결은 즉 안정적이고, 이익평형은 즉 수완이며, 분쟁이 없는 것은 즉 능력이고, 타협은 즉 화해(搞定就是穩定、擺平就是水準、無事就是本事、妥協就是和諧)”, “나쁜 화해는 좋은 판결보다 낫다(壞的和解勝過好的判決)” 등의 구호가 생기면서 사법 실무 과정에서 성행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각급 행정 기관은 적극적으로 대조정 제도를 선도하였다. 하지만 현재 지나친 “조정열(調解熱)”은 많은 폐단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조정제도의 분쟁해결이라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게다가 근년 이래 중국조정제도와 실무에서 많은 전형적인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학자들에 의한 이론적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의 수많은 조정관련 사법적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 외 중국은 현재 민사 소송법전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 중 조정 입법에 대한 개정이 중요한 내용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조정제도에 대한 연구는 시기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본 논문은 이러한 취지에서 조정제도의 이론적 내용과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하였

다.

비록 조정 제도는 세계 각 국가에서 부르는 명칭은 달라도 중요한 분쟁 해결 메카니즘으로 삼아 있다. “화합 문화”의 전통을 갖고 있는 중국에서 조정은 다원화된 분쟁 해결 메카니즘의 중요한 제도이며, 이에 대한 연구는 학계의 중요한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가 사법 정책의 영향 하에서 조정비율은 법원의 중요한 평가지표로 이며, 동시에 조정은 실제 절차는 규범적이지 않다. 따라서 학자는 법원민사법관이 “사회업무자”로 삼는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이는 조정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불리하다. 따라서 중국의 사회 구조 조정의 배경에서 중국 조정 제도에 대한 연구를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조정이론의 수준 제고 및 조정제도 설립에 대한 정책 입안, 그리고 화해지향적 분쟁해결을 위한 규범화 작업 등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며, 나아가 민사소송법전의 개정과정에 일조함으로써 조정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개혁을 이끌어 낸다는 것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조정 제도는 중요한 분쟁 해결 제도의 하나로써 분쟁해결 측면에서 독특한 우세적 지위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면, 조정제도는 분쟁당사자 간의 인간 관계를 회복시키고 당사자 의사 자치를 더욱 존중하며 고효율적으로 분쟁을 화해시키고 비밀성이 보장되어 당사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호가 용이하기 때문에 판정결과에 대하여 당사자가 쉽게 받아드린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의 중요한 대체성 해결분쟁의 방식(ADR)으로 살았다. 화해사회를 구축하는 배경하에서 이는 분쟁 해결의 기능을 중시하고 또한 충분히 발휘함으로써 사회 안정의 실현과 사회지배방식의 개선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하지만 규범성이 결여된 “대조정”(大調解) 및 전국 각지에서 보충적으로 일어나는 과도기적 “조정열”은 정상적인 발전 궤도를 벗어났으며, 따라서 조정제도의 위치확정과 기능을 발휘하는데 불리하다. 이에 민사 조정을 규범화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대한 중요

한 과제로 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민사조정을 규범하는 것은 특히 다원화된 분쟁 해결 메카니즘 중 조정의 역할에 대한 입지를 명확히 하고, 합법적 차원에서의 민사 조정제도의 발전을 보장하고, 화해지향적인 분쟁 해결 메카니즘으로써 조정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조정제도의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화해지향적인 사회안정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2. 연구 목적

중국의 조정 제도는 연구가치가 충분하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중국학자들은 이 연구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여 조정제도의 사법적 실행제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였다. 특히 중국 사법제도의 구조조정에 밀려 깊은 연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특히 민사조정 of 규범화 과정과 분쟁해결 메카니즘으로서의 입지문제, 조정기술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법 적용과 정책 등의 문제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하였다. 따라서 중국 조정제도의 개혁에 대하여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외국의 조정제도 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문의 주요 연구목적은 아래의 내용으로 귀납한다.

첫째, 중재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과 내용으로 중국 및 해외(한국, 일본, 미국) 중재 내용에 대한 정의, 중재 유형, 중재 절차, 중재 효력 및 중재 입법 등을 분석하여 중국 중재 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고자 한다.

둘째, 기타 국가의 중국 중재제도 혁신에 대한 참고적 의의를 가진 관련 제도를 이해한다.

셋째, 중국 “중재법”에 따른 연유, 중국 및 한국, 일본, 미국 등 4개 전형적인 국가의 중재 제도 운영 현황을 비교하고, 중국 현대 중재 제도에

내재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한다.

넷째, 개념위치, 구체적인 제도 배정 및 제도 운영 보장 등 측면으로부터 중국 중재 제도 보완 등을 통하여 규범화시키고 중국 현실적인 상황에 맞는 분쟁 해결 방법을 강구한다.

다섯째, 중재 제도는 현대적인 변화에 대면하고 있으며 많은 문제들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민사 중재에 대한 규범화 및 합리적인 위치에 따른 다양한 분쟁 해결 매커니즘 중의 위상 및 합리적인 법률, 정책 보장 및 완벽한 중재 기술 유도는 본문의 중점과 과제로 삼는다.

여섯째, 기타 대표적 국가의 중재 입법 경험을 통합하는 기반으로 중국의 중재 입법 작성방식을 연구한다.

3. 연구 방법

본 논문은 조정제도에 대한 외국의 사례와 중국의 제도를 비교분석하고, 동시에 실증적인 조사를 통한 연구방법을 시행한다. 그 외, 다양한 규범 분석과 유형 분석 등의 방법으로 고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비교 분석법

민사 조정 제도는 세계적으로 명칭이 달라도 중요한 분쟁해결제도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의 전통과 문화, 입법 정책, 소송심리 모델 및 실행절차 등의 차이로 인해 각 국가의 조정 제도는 비교적 큰 차이점을 갖고 있다. 본고는 각 국가의 조정 제도를 소개하면서 장점들을 중국 조정제도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나. 실증 조사 연구법

법제도의 개선은 이론과 논증을 근거로 할 뿐만아니라 사법실무 및 실제사건의 분석이 토대가 되어야 한다. 본문은 주로 지나친 조정율의 폐해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써 중국 조정제도의 현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연구의 주된 목표를 설정하고 현실성과의 정합성을 높인다.

다. 귀납법

조사 연구는 귀납적 방법과 실질적인 사법실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 논리를 개발하여 중국 민사조정 제도의 개혁에 대하여 고찰한다.

라. 규범 분석법

법률의 규범적 내용에 대해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은 법학연구의 기본이므로 조정제도와 관련된 최근의 문서를 분석하는 것은 당연하다. 최근 중국 중앙사회치안 종합관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등이 발표한 <모순분쟁 대조사 대조정 업무를 확실히 실행하는데 대한 의견>(關於切實做好矛盾糾紛大排查大調解工作的意見), <모순분쟁 대조정 업무의 추진에 대한 지도 의견>(關於深入推進矛盾糾紛大調解工作的指導意見), <“조정 우선, 조정 판결 결합”의 진일보한 관철 원칙에 관한 약간의 의견>(關於進一步貫徹“調解優先、調判結合”原則的若干意見) 등을 통하여 중국 조정제도의 실질적인 적용상황을 연구하는 소재로서 활용한다.

마. 유형화 분석법

중국의 조정 제도는 주로 법원 조정, 행정 조정과 인민조정 등 3가지 부분으로 나뉘는데 본문은 다른 3가지 유형에 따라 각종 조정 제도의 폐단에 대해 유형화 하여 그 개선점을 제시한다.

II. 조정제도의 기본이론

역사가 유구하고 오래 지속된 분쟁 처리방식인 조정 제도는 충돌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 불화를 해소하는 기능 때문에 대중적인 선호도가 높았다. 1960년대 이후, 일부 국가에서는 사회갈등이 복잡다단해지면서 “소송이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분쟁의 사법처리에 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치국가에서는 “정의에 접근”¹⁾의 운동이 일어났고, 그와 더불어 소송을 대체할 수 있는 분쟁 해결 메카니즘으로서 조정 제도가 재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 조정은 각국의 민사 사법과정에서 활용도가 높을 뿐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잘 정립되어 있었다. 이러한 국가의 조정 제도는 중국 조정 제도의 개혁에 중요한 의의가 있으므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 조정 제도의 개선점을 찾기 위해 한국, 일본, 미국 등 주요 국가의 조정 제도에 대해 이론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비교법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1. 조정의 개념

중국의 조정제도는 중국에서 유구한 역사만큼이나 광범위하게 운영되면서 정의 개념 또한 다양하다. 중국 특유의 조정제도에 기인한 개념정의

1) 20세기 70년대, 이탈리아의 저명한 법학자인 마우로 캐펠레티(Mauro Cappelletti)의 선도하에 “각국 정부는 응당 당사자의 사법 구제 취득 권한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사법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상응한 보장을 제공하고 저해 요소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이론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본 이론의 지도하에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는 “정의(正義) 접근(接近) 운동”이 열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영어권 국가에서 “justice”는 우선 공평(公平), 공정(公正), 정의(正義)를 상대로 하고 그 다음으로 사법(司法), 심판(審判)을 상대한다. 정의(正義)에로의 접근(接近)이라는 이념이 표현하고 자는 첫번째 의미는 사법(司法)으로의 접근(“법원 접근”이라고도 함)이다. 왜냐하면 사법은 사회 정의(正義)의 최후 보장장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편으로 공평, 공정, 정의는 또한 사법 자체가 반드시 구비해야 할 요소들이다. 따라서 “정의 접근”의 두번째 의미는 사법의 공평, 공정, 정의를 보장하고 소송에 참여한 매 개인으로 하여금 정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는 외국의 개념과 비교할 때 그 차이점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조정주체, 방식, 집행 등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통일되고 공통된 정의 기준이 없다. 여기에서는 주로 중국, 한국, 일본, 미국 등 주요 국가의 조정 제도의 형성과 관련된 기본적이고 공통된 내용을 소개하기로 한다.

가. 주요 국가의 조정 개념

(1) 한국 및 일본

일본은 독일법을 가장 성공적으로 받아들인 대륙법계 국가 중 하나로서 민사 소송 제도가 비교적 잘 발달된 국가이다. 따라서 일본 조정 제도는 중국 조정제도의 개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 조정 제도는 개념과 특징상 모두 일본과 유사하며 중국의 조정 제도 개혁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있다.²⁾ 한국과 일본에서 소위 민사조정제도란 당사자의 신청 혹은 판사가 담당 사건을 조정에 맡기고 조정 담당판사 혹은 법원 내부의 조정 위원회에서 간단한 절차에 따라 각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당사자 쌍방에게 상호 합의를 달성하게 함으로써 민사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³⁾

(2) 미국

미국의 조정개념과 중국의 조정개념에는 일정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미국의 조정은 당사자가 공정하고 편견이 없는 제3자의 도움 하에 충분한 교류 협조를 통해 사적으로 해결하는, 투쟁이 없고 구속력이 없는 절차이

2) 한국의 “조정(調停)”함의는 일본의 조정과 같고 중국의 조정(調解)과 단어상의 차이가 있을 뿐 함의는 비슷하다.

3) 李在睦, 民事調停制度的狀與問題, 新法學, 創刊號(1997).

다.4) 조정위원의 역할은 당사자 사이의 교류를 추진하는 것이지 해결 방안을 당사자에게 억지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조정위원은 일방에게 권고하거나 편들지 않는 상태로 판결을 진행한다. 반면에 조정위원과 각 당사자는 공동으로 노력하여 당사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조정위원으로서 조정의 과정만 제어할 수 있고 결정권이 없으며 주로 당사자들이 카 실질적인 조정결과를 이끌어 낸다.

나. 중국의 조정 개념

중국의 조정 제도는 중국 학계에서 조정의 개념에 대해서 견해가 나뉘고 있다. 비교적 일치되고 있는 관점은 조정이란 쌍방 혹은 다방 당사자 사이에 민사 권익 분쟁이 발생한 이후,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또는 인민법원, 법정, 대중 조직 등이 화해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 이러한 조정조직을 통하여 완화 해결하고, 설득 교육시킴으로써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게 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다.5)

특히 주의할 점은, 중국에는 또한 조정과 유사한 제도인 화해 제도가 있다. 이는 본질적으로 조정 제도와 동일하고 이는 당사자의 합의하에서 분쟁을 해결한다. 하지만 양자는 현저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화해는 당사자 쌍방이 스스로 분쟁 해결을 추진하는 과정이 강조된다. 조정은 중립의 제3자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당사자 쌍방이 쟁의 해결의 합의점을 달성하도록 촉진하는 것을 강조한다. 즉 화해는 당사자 쌍방의 순수한 개인적 권한 내에서의 자발적 협상 결과이지만, 조정은 주로 중립의 제3자가 설득 교육한 결과이다. 따라서 두 가지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중립의 제3자가 직접적으로 분쟁 해결의 개입 여부에 있다.

4) Robert E. Well,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What is It? In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Law Journal, Vol. 28, 2004.

5) 張友漁, 中國大百科全書·法學卷(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84), p. 589.

하지만 주의할 점은 제3자가 개입한 모든 분쟁 해결 방식은 모두 조정인 것은 아니다. 관건은 여기의 제3자는 중립적인 방식으로 직접 개입했는지에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가령 제3자의 개입이 있더라도 제3자가 중립의 방식으로 직접 개입하지 않을 경우 화해에 속하며 조정이 아니다. 예를 들면, 일방 당사자가 초빙한 변호사가 화해에 참여한 경우이다.

다. 조정 관련 개념의

(1) 각국 법원조정의 명칭

세계 각국의 조정제도를 살펴보면, 법원 조정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법원에 부설된 조정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 소송중의 조정이다. 전자는 법원에 부설된 ADR의 일종이다. 예를 들면, 일본의 민사조정과 가사조정 제도 등이다. 후자는 해외 소송법의 관행상 “소송상 화해” 혹은 “재판상 화해”라고 부르는데 중국의 법원 조정과 비슷한 것이다. 중국에서는 입법상 소송 외 법원에 부설된 조정에 대한 규정이 없다. 민사 소송법 중의 “법원 조정”은 소송절차 과정중의 조정이며 소송 조정에 속한다. 따라서 중국의 대부분 교재 혹은 전문서적에서는 “법원조정”을 “소송 조정” 혹은 “사법 조정”이라고 부르고 있다. 본문에서 말하는 “법원조정”은 소송 과정 중의 조정으로서 좁은 의미의 “법원 조정” 개념에 해당한다.

(2) 중국의 법원 조정과 기타 국가 소송상 화해의 구별

법원 조정은 소송 조정 즉 민사 소송중의 조정이라고도 칭하며, 당사자 쌍방이 법원 재판기구의 주관 하에 민사권의 평등 협상에 대해 합의를 달성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활동을 가르킨다.⁶⁾ 해외의 소송상 화해는 비록